

의안번호	2213712
의 퇴 인	임오경의원
회 답 일	2025. 12. 15.
추계번호	25C5701

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라 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9,000만원, 2030년 9,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8,000만원(연평균 3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 수립·시행(안 제5조)	90	-	-	90	-	180	3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축제의 중장기 육성·지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6조(문화관광축제 홍보 등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문화관광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축제의 성공사례 발굴·포상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7조(전문인력의 양성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관광축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	재량규정
4	안 제8조(지역축제 실태 조사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축제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지역축제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9조(문화관광축제의 지정 등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적·관광적·경제적 가치 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축제 중 지역축제의 특성이 뚜렷하고 콘텐츠가 우수하는 등의 기준을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충족하는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3년마다 평가하여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할 수 있음	
6	안 제11조(글로벌 축제의 지정 등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축제의 콘텐츠 경쟁력과 글로벌 인지도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문화관광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지정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)	○	
2	안 제6조(문화관광축제 홍보 등)	×	- 실시 중
3	안 제7조(전문인력의 양성)	×	- 실시 중
4	안 제8조(지역축제 실태조사)	×	- 실시 중
5	안 제9조(문화관광축제의 지정 등)	×	- 실시 중
6	안 제11조(글로벌 축제의 지정 등)	×	- 실시 중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에 해당(안 제6조~제9조, 안 제11조)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「관광진흥법」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거나 정책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이 수행되고 있음

[표 2]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

조·항(조제목)	현행 사업(2025년 예산)
안 제6조(문화관광축제 홍보 등)	홍보·마케팅 지원 440백만원 글로벌 축제의 해외진출, 인바운드유치 지원 등 1,100백만원
안 제7조(전문인력의 양성)	축제 전문인력 양성 100백만원
안 제8조(지역축제 실태조사)	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2 ¹⁾ 지역축제 개최 계획 조사 2백만원
안 제9조(문화관광축제의 지정 등) 및 안 제11조(글로벌 축제의 지정 등) ²⁾	문화관광축제 지정 6백만원('24~'25 지정시 예산) 글로벌 축제 지정 12백만원('24~'26 지정시 예산)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법률안 심사·의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(안 제5조)에 따라 3년마다 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 예상

- 1)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2(지역축제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.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.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·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.
④ 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2)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41조의8(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)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.
1.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
 2. 축제의 운영능력
 3. 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
 4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- 제41조의9(문화관광축제의 지원 방법) ①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축제의 개최자는 관할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1조의7에 따른 지정 기준에 따라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한다.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받은 문화관광축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은 제정안 시행 첫해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
-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로 3년마다 9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
 - 문화체육관광부는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비로 2023년도에 9,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

[표 3] 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	90	-	-	90	-	18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assembly.go.kr